#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15

발의연월일: 2021. 4. 12.

발 의 자: 박상혁·김홍걸·최인호

한병도 · 김병욱 · 최기상

서영교 · 이소영 · 진성준

배준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대도시 중심 물류량이 증가하면서 물류창고 시설의 첨단화가 시급한 실정임.

현재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으로 물류창고 첨단화를 위한 자발적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비용에 비해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제도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하여 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해당 스마트물류센터가 생활물류시설인 경우 추가 감면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스마트물류 전환을 촉진하고 생활물류종사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5 신설).

####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5(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스마트물류센터(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 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해당 스마트물류센터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생활물류시설인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을 추가로 경감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 받은 스마트물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100일 이내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받지 못한 경우
-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이 취소된 경우

③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해서는 인증 등급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해당 스마트물류센터가「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의 생활물류시설인 경우재산세의 100분의 5를 추가로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현재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5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7조의5(스마트물류센터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스마트물류센터
	(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스
	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인
	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를 100
	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바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u>
	지 경감하며, 해당 스마트물류
	센터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
	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생활
	물류시설인 경우 취득세의 100
	분의 5을 추가로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
	감 받은 스마트물류센터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를 추징한다.

- 1. 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100일 이내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이 취소된 경수
- ③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스마트물류 센터에 대해서는 인증 등급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 며, 해당 스마트물류센터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의 생활물류시설인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를 추 가로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스마트물류센 터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한다.